##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진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06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5.

발 의 자:정진욱 · 민형배 · 박희승

김남근 • 박해철 • 이수진

이재관 • 박민규 • 박홍배

이개호 • 조인철 • 문금주

이언주 · 백승아 · 양부남

이용선 · 임광현 · 안도걸

이광희 · 황명선 · 추미애

송재봉 · 김영환 · 이병진

한민수 의원(25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대안교육기관을 설립·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.

그런데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대안교육기관을 설립·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할 필 요가 있음.

이에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

로 파면·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역시 대안 교육기관을 설립·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5호의2 및 제17조제2항제6호의2 신설등).

법률 제 호

###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로 파면·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 제17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로 파면・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 제18조 중 "제17조제2항제7호"를 "제6조제5호의2 또는 제17조제2항제6호의2·제7호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대안교육기관을 설립·운영하던 자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이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6조제5호의2 및 제17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	제6조(결격사유)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안	
교육기관을 설립・운영할 수	
없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5의2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
	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
	<u>죄 행위로 파면·해임되거나</u>
	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
	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
	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
	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
	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
	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6. • 7. (생 략)	6.•7. (현행과 같음)
제17조(교원의 자격) ① (생 략)	제17조(교원의 자격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
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	
용될 수 없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6의2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
	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

7. (생략)

제18조(벌금형의 분리 선고) 「형 제 법」 제38조에도 불구하고 <u>제1</u> 7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 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 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.

죄 행위로 파면·해임되거니	<u>}</u>
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니	<u>}</u>
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	<u>:</u>
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	1 <u>汇</u>
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	==
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건	<u>}</u>
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	
7. (현행과 같음)	
18조(벌금형의 분리 선고)	_
제	6
조제5호의2 또는 제17조제2형	]- S
제6호의2·제7호	
	_
	_
	_